

2006. 9. 15(금)
제253회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6. 9.7(목)

제253회 정례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8월 28일

○ 회부일자 : 2006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충청북도정례회

○ 2006. 9. 7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안 제2조)

-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안 제3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안 제4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안 제5조)

- 위원회내에 5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안 제6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친 경우, 품위 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도 있음을

정하였음(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 김재준)

-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향후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보다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
----------	----

제출연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위촉함(안 제2조)
- 나.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 연임가능 함(안 제3조)
- 다. 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위원회(소위원회 포함)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안 제6조)
- 바. 본청 및 각급기관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 집행 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토록 함(안 제7조)
- 사.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토록 하고, 7일 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 아. 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친 경우, 품위 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나.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경리관(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영 제25조제4호카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의요청 등)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반영)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

한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 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99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 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한하여야 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

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⑪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7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